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보훈정책 개선 연구

朴 均 烈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1. 머 리 말
2. 국가보훈정책의 이론적 배경
3. 베트남전쟁 및 참전용사에 대한 평가
4.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현황 및 보훈실태
5. 향후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정책 개선방향
6. 맺 음 말

1. 머 리 말

국가 자체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이것이 그 구성원들의 안위와 항구적인 번영을 위한 공동체라고 가정할 때, 그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 헌신은 ‘초과의무적 행위’(supererogatory actions)이

다.¹⁾ 이러한 행위는 그 구성원들로부터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그러한 존중감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월하여 의무를 다하는 행위에 대한 존중을 ‘국가보훈’(Patriots and Veterans Affairs)이라고 할 수 있다.²⁾ 국가보훈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가 공동체의 존립·유지·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국민들의 국가적 공헌에 대하여 행하는 보답행위로서 그 공헌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명예를 존중하고 현창하며, 그에 상응한 보상과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명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정의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³⁾ 많은 국가들은 보훈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안보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고,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상징체계의 하나로서 공동체 발전의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순기능 때문에 중요한 국가시책으로 다루고 있다.⁴⁾

베트남전 참전용사⁵⁾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훈·선양활동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느끼는 상황은 대체로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⁶⁾ 첫째, 베트남전은 ‘부당한 전쟁’(unjust war)이라는 국

1) 박효중, “보훈문화 정립의 한 시도: ‘애국적 헌신’에 관한 도덕적 위상을 중심으로,” 『보훈제도의 역사적 조명』, 한국보훈학회, 2003. 11. 10, pp. 1-30.

2) 국가보훈의 영문 표기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의 표기가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로 되어 있어 이를 따른다. 하지만 『보훈연감』의 내용 중 일부에서는 ‘보훈대상자’를 ‘Persons of National Merit’로 표기함으로써 용어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없는 듯한 인상을 준다.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2004』, 제25호, 2005. 9, p. 69.

3)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 일진사, 2005, p. 25.

4) 김종성, 위의 책, pp. 29-32.

5) 여기서의 ‘참전용사’는 보통명사이다. 법령에 근거한 ‘참전유공자’와 구별되는데, 이 논의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현행 법령하의 ‘참전유공자’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6) 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2005년 11월 중에, ‘대한민국월남참전유공전우연합회’(회장: 황명철), ‘(사)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회장: 석정원), ‘대한민국베트남참전인터넷전우회’(회장: 정무회)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이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였다.

가·사회적 여론에 휩쓸려 참전용사들의 ‘정당한 전투’(just combat) 자체도 ‘잊혀진 전쟁’의 범주 속으로 편해지고 있다. 둘째, 베트남전이 아닌 전쟁, 즉 6·25전쟁 및 그 참전용사들에 대한 국가·사회적 기억에 비해 월등히 관심이 부족하다. 셋째, ‘초월적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희생자’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상대적 자괴감을 느낀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보훈정책이 국가에 대한 초월적 의무, 자발적 헌신과 공헌을 추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훈·선양활동을 진단해 보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국가보훈정책의 이론적 배경

한국에서 국가보훈 주제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2002년 6월 4일 『(사)한국보훈학회』가 출범하게 되고, 동년 11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학술지가 발간되고 있다. 이전 시기에도 국가보훈이라는 주제는 국가학, 역사학, 정치학, 법학, 정책학, 행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군사학, 문화인류학, 심리학, 윤리학, 의료학 등의 분야에서 다루어져왔지만 단일 학문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반 10년이 되지도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마당에 선행 연구에 의한 이론적 배경을 열거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보훈이 갖는 당위적인 요청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에 대한 접근법, 내용론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 진술하고, 특히 국가보훈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참전)군인의 헌신적 행위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부가하고자 한다.

(1) 국가보훈정책 접근론

국가보훈정책에 대한 접근법으로 알려진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우선 유영옥 교수는 국가보훈 문제의 접근법을 북한 연구방법론을 의식하여 사회주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국가보훈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내재적 접근법(internal approach)이라고 보고, 여기에 사회변동접근법, 동원접근법, 전체주의접근법 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자유·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국가보훈 현상을 분석하는 시각을 외재적 접근법(external approach)이라고 보고, 여기에는 법제도적 접근법, 역사적 접근법, 체제론적 접근법 등이 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이들이 모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상징주의적 접근법을 제안한다.⁷⁾ 이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상징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언어, 의식, 신화, 이념, 사건, 제도 등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이 은유성, 모호성 등의 특징이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를 살펴보는 접근법이다.

다음으로 김종성은 보훈문제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⁸⁾

첫째, 제도의 양태나 운영과정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정치학에서 사용되는 접근법이다. 여기에는 공식적 법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존재양식을 기술하는 제도적 접근법, 역사적으로 제도의 출현과정을 연구하는 역사적 접근법, 정치과정에 있어서 참여자의 행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과정적 접근법, 혼합적 접근법 등이 있다.

둘째, 공공문제의 정부귀속 시점을 기준으로 문제가 정부에 귀속된 이후 일어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제도과정적 접근법과 정부귀속 이전의 공공문제에 대한 연구를 중시하는 정책과정적 접근법이 있다.

7) 유영옥, 『국가보훈학』, 홍익재, 2005, pp. 76-95, 325-331.

8) 김종성, 앞의 책, pp. 33-34.

셋째,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유무를 기준으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현상에 대한 기술과 설명에 초점이 있는 경험적·실증적 접근법과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을 연구하는 규범적·처방적 접근법이 있다.

넷째, 정책형성에 있어서 결정행위의 합리성의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적 접근법과 비합리적 접근법이 있다. 더 세분화하면 합리모형,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만족모형, 최적모형, 혼합투사모형(mixed scanning model), 쓰레기통모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국가보훈을 주제로 한 연구모형은 선행 학문분과에서의 다양한 방법론이 혼재하여 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보훈에 대한 연구만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접근법이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본다. 결국 국가보훈을 연구하기 위한 접근법은 국가에 대한 공훈을 어떻게 잘 보답할 것인가 하는 당위적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가보훈정책 내용론

국가 공동체 속에서 보훈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그 내용은 ‘보상행위’와 ‘기억행위’로 구성된다.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의 보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표 1〉 참조), 이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표 2〉 참조).

국가보훈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보상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일반적인 국가에 의한 배상 및 보상과 비슷한 점이 다소 발견되지만(〈표 3〉 참조), 후자의 기억행위는 후손에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것으로서 국가보훈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훈선양’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표 1> 주요국 보훈제도

		한 국	미 국	중 국	일 본	호 주
지원 기구		국가보훈처	제대군인부	민정부우무안치국	후생성사회원호국, 총무청은급국	보훈부
지 원 형 태	직업 보도	제대군인 중심으로 1회한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알선	복지권보존, 사회정착교육, 직업훈련, 가산점 부여, 특정직 우선 채용	취업의 우선권-가족1인 우선 취업	고용기회 제공	
	대부 지원	10년 이상 복무후 중사 이상으로 전역시 주택구입, 임차, 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제도	주택구입시 구입가의 50% 범위 내에서 정부지불 보증	대부 및 주택분양의 우선권, 퇴직후 기준에 따른 생활비지급	생활복지자금대부, 공영주택우선입주 각종세금 감면 혜택	주택구입시 시중 은행융자 알선 25,000\$ 수준
	교육 지원	전역 3년 이내 대학진학시 본인입학금 및 수업료 50% 국고보조, 일정소득이하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자녀 학비 국고보조	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 4, 5개월 이내 학비지원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시 잡비면제, 학비보조금 제공, 학생대부 제공, 공영유치원·탁아소우선 입학	교육기회부여(정착지원센터 6개 운영) 적응교육 실시	
	의료 지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창군자보훈병원가료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참전군인진료비(본인부담진료비 30%)	연소득 19,408\$ 미만자 입원시 전액무료, 상소득 이상의 경우 보호대상자의 치료비에 해당비용 부담	의족, 휠체어 등 보조기기 제공, 상이위로금 지급, 교통요금 우대	요양급부 및 수당, 재활의료, 보철구 지급 및 수리, 국립요양소 수용, 의료비지원	노령자 정양원 운영, 간호사 방문서비스
	장애 지원	상이등급 등외판정의 경상이 제대군인에 대한 상이처의 국비가료제도, 대통령증서 교부, 영구용 국기증정	묘비·묘석지원, 용구용 국기증정, 국립묘지 안장, 대통령명의로 추모증서 제공	장례보조비 지원	장애연금, 장애일시금, 장애비지급, 청각장애자에 대한 소포우편요금 할인	전쟁묘지 설치 운영
	기념 사업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호국용사묘지 안장지원(배우자는 합장시에만 가능), 전쟁기념사업(국방부), 6·25행사(재향군인회)	참전기념탑공원 건립	혁명열사명부 편찬과 선양, 공훈영예장 제공, 정액의 영예금 지원	참전자유골수집, 추도식, 위령비 건립 등	전쟁기념관 운영, 무료입장
기타			상담자영사업 지원, 휴양시설 지원		전상병자상담원 지원	서비스연금지급 -60세이상자(일상반노령연금) 상담센터 운영

출처 : 사단법인한국보훈학회, 『보훈정책의 현황과 전망』, 홍익재, 2004, pp. 49-50
발췌정리.

<표 2> 보훈정책의 체계

	목표	활동	하위활동
보상복지 정책	영예로운 삶의 보장	보훈보상	보상금, 보조금 지급
		의료보장	가료, 재활, 요양, 정양보호, 보장구
		생활지원	교육, 직업, 주택, 양육·양로보호
		사회적 우대	시설이용, 제세공과금 감면
		사망 예우	장례, 안장지원
공훈선양 정책	명예존중· 애국심 함양	명예현창	서훈, 기록보존, 공훈(추모)록
		기념행사	기념일, 추모행사
		기념사업	시설물, 사적지, 국립묘지 관리
		교육홍보	교육과정 운영, 자료제작·보급

출처 : 김종성, op.cit., p. 112.

(3) 참전용사의 행위에 대한 규범적 근거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로 공공의 복리를 위해 헌신·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대부분이 공무원일 경우가 많으며, 설령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경우에 국가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우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의거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분보장이 엄격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정치운동금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등 매우 까다로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의무준칙 이외에도 별도의 의무사항을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군인복무규율’ 제3장에 따르면 충성의무, 성실의무, 국민에 대한 친절의무, 정직의무, 품위유지의무, 비밀엄수의무, 전쟁법 준수 의무, 청렴 및 검소 의무, 환경보전의무, 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 직권남용 금지의무, 사적제재 금지의무,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의무, 불온표현물 소지·전파 금지의무, 정치적 행위 제한의무,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그리고 근무지의 위치에 따라 내무생활 의무까지 부여되어 있다.

참전용사의 경우, 이상의 일반적 공무원으로서 의무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군인으로서의 평상시 의무사항 준수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더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하는 숭고한 정신”을 발휘하게 된다.

군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엄격한 의무사항은 기본적으로 준수하면서 임무 완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게 된다. 이렇듯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행동은 규범초월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4)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의 규범적 근거

참전용사의 행동은 실증적 규범을 초월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실증법적 규범 중에서 마땅히 가장 높은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의 법률적 근거는 권리보장법, 사업수행법, 관련단체지원법,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기본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보훈관계법 체계

	법률(제정일/최근개정일)	기능
기본법	국가보훈기본법(2005.5.31)	총괄규범
권리 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994.12.31/2005.7.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4.8.2/2004.1.20)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993.12.27/2003.5.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2004.1.2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1993.3.10)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1997.12.31/2001.1.2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4.1.29)	유공자 예우 유공자 예우 유공자 예우 유공자 예우 생활지원 생활지원 생활지원
사업 수행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7.29제정/2006.1.30시행) 보훈기금법(1981.3.27/2004.1.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1981.4.4/2001.1.16) 전쟁기념사업회법(1989.1.1/1991.21)	안장대상 등 대부사업 등 의료사업 등 기념사업 등
단체 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63.8.7/2000.12.3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1963.7.19/2001.1.8)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출처 : 김종성, 앞의 책, p. 156을 토대로 보완함.

3. 베트남전쟁 및 참전용사에 대한 평가

(1) 베트남전쟁에 대한 몇 가지 부적절한 기억들:

문학작품 중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은 엄밀한 학술논의나 정사(正史)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소위 ‘전쟁 자체의 부당성’이라는 측면과 ‘전쟁 수행상의 부당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는 추가적인 많은 논의가 더 숨겨져

있는데, 흔히 문제시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쟁 자체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전쟁 수행상의 정당성은 당연히 생각할 바도 없다는 입장과 전쟁 자체의 정당성이 설령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고 또한 수적대로 수행했다면 전쟁 수행상의 정당성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의 대립이다. 앞서 간략히 논의한 바와 같이 전쟁에 대한 평가 척도로서의 ‘전쟁 자체의 정당성’과 ‘전쟁수행상의 정당성’의 객관적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더라도 군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되는 것은 후자의 정당성이다.

그런데 기존의 베트남전쟁 평가는 두 개의 정당성을 구분하여 논의되지 않았다. 특히 전쟁자체의 부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입장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이상주의적 경향마저 띄게 되어 다양한 문화적 기제와 함께 한국사회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평가 분위기를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과거의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참전용사들에게도 좋지 않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전쟁으로 인해 ‘라이파이한’ 문제라든지, 민간인 학살 논란 등과 같은 전쟁윤리적 문제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 접근은 주로 문학이나 비판적 지식인들의 작품을 통해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은 이후 영화화되거나, 다른 비판적 지식인들의 연구에 일종의 전거 역할을 함으로써 그 잘못된 파장은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의 작가들이 베트남전을 소설화하는 작업을 한 것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관련된 몇 명의 작가를 중심으로 한 문학작품의 개황이다. 첫째, 1977년 발간된 박영한의 『머나먼 송바강』이다. 이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전쟁 중 삶이 망가지는 인간의 고통을 그린 소설이다.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면서 작가의 출세작이 된 이 소설은 베트남전쟁을 본격적인 소재와 공간으로 도입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 황석영의 작품들이다. 이는 1970년대 베트남전의 상처와 자기반성을 다룬 단편 『탑』을 시작으로, 장편 『무기의 그늘』(1985) 등 많은 작품들을 발표했다. 특히 『무기의 그늘』은 암시장이라는 독특한 상황 설정을 통해

베트남전쟁의 실상을 객관적 시각으로 조명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황석영은 1967년 다낭 합동수사대의 시장조사원으로 전쟁에 참가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 소설을 썼다.

셋째, 안정효의 장편소설 『하얀전쟁』(1983)이다. 이는 미국에서 번역·출간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주목을 받았다. 안씨의 등단작품이기도 한 이 소설은 이후 3권 분량의 장편으로 개작되었다. 정훈병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작가가 당시 전쟁경험을 충실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글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베트남전쟁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던 주인공 한기주 병장이 동료들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전쟁의 참극을 알게 된다는 이 소설은 전쟁의 후유증에도 주목한다. 귀국한 뒤에도 베트남전쟁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삶은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간의 삶을 괴롭히는지를 고발한다.

넷째, 이원규의 1987년 장편 『훈장과 굴레』이다. 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가한 박성우 소위의 후회와 자각을 그렸다. 동료들이 전쟁의 돈과 명예에 집착하다가 죽어가고, 사랑했던 베트남 여성이 한국 군인과 비밀리에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로 몰살을 당하는 등 고통을 겪은 주인공은 자신이 전쟁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다섯째, 이상문의 1989년 펴낸 『황색인』이다. 이는 베트남 전쟁 중 군수품 유통과정에 몸담은 주인공이 역사의 모순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면모 등을 차례차례 알아나가는 소설이다. 특히 베트남 민족의 독립운동, 한국과 베트남의 동질성 등을 조명해 새로운 시각으로 베트남전쟁을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섯째, 이대환의 2001년 장편 『슬로우 불릿』이다. 이는 베트남전쟁 후 고엽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베트남전쟁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우리의 상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리는 작품이다.

이상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참전용사의 경험을 토대로 이

루어졌는데, 이것이 그 전쟁 자체의 성격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참전용사들 중에는 전투수행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참전용사들이 앞선 저술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모두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필자는 사회 일각 또는 전반에서 이를 단초로 전쟁 자체를 모두 평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2) 베트남전쟁에 대한 재평가

과거의 특정 시점 상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현재의 시점에서 재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순식간에 진행되었던 전쟁이 아니고 몇 년간이나 지속된 전쟁상황을 하나의 척도로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그 주관적 척도가 갖는 한계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각 분야별로 평가하자면, 첫째, 고엽제 피해 문제이다. 이 문제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 심지어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베트남의 민간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의 군인 이외의 상사원이나 기술자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다. 물론 그들이 모두 고엽제와 관련된 법령에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당시 미군은 1962년부터 1971년 1월 사이에 오렌지제(Agent Orange)와 같은 고엽제를 사용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약품은 ‘신경작용제’(nerve agents), 포스젠(phosgene) 등과 같은 ‘치명적인 화학무기’(lethal chemical weapons)로 알려지지 않는 않았다.⁹⁾ 이것이 화학무기금지협약(Convention

9) 하버(Frances V. Harbour)는 여기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Harbour, op.cit., p. 113.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의 금지무기에 포함된 것은 1993년의 일이다.¹⁰⁾

고엽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 문제는 전쟁수행상의 범주에 속한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에 의한 고엽제의 살포는 전쟁수행상의 정당성 측면에서 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우선 전쟁수행의 군사적 수단이 전쟁목적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전장상황 속에서 적정의 불명확, 민간인과 정규군의 혼재, 그리고 소위 ‘호찌민 루트’를 통한 예상치 못한 중간 침투 등은 어느 정도 이 원칙을 충족해 준다고 사료된다. 또한 금지된 수단 사용금지 원칙에 의한 비난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¹¹⁾ 왜냐하면 당시 기준에 의하면 고엽제가 국제적인 금지화학무기 목록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전투원과 비군사적 목표물을 고려하는 분별성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의도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베트남의 민간인 희생이 객관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분석을 지지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비례성과 분별성의 원칙에 있어서 평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효과의 원칙 또한 명확한 평가가 어렵다.

전반적으로 베트남전쟁에서의 고엽제 사용은 전투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당성은 있었지만, 그 사용대상 및 지속시간 등에 있어서

10) Andrew Valls, “테러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Andrew Valls 편, 박균열 외역,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철학과현실사, 2004, p. 113.

11) 호찌민 루트는 북위 17도선 북쪽의 팡빈(Quang Binh)성에서 시작해 베트남 중부의 험준한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경선의 쩡영선(Truong Son, 長山) 산맥을 따라 라오스와 캄보디아 지역 내에 설치된 북베트남군의 보급로를 말한다. …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북베트남이 자신들의 영토에 군사도로를 건설하고, 이 통로를 통해 수많은 군대가 투입되는 사실에 대해 하등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했다. 최용호,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 95.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여 전반적인 정당성 확보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라이파이한 문제이다.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이 전장에서 자신의 임무 이외의 활동을 통해 빚어진 불상사는 불법적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베트남전쟁에 있어서 한국군에 의한 것으로 주장되는 혼혈아의 문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보도에 의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라이파이한은 최소 5천 명에서 최대 3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베트남전쟁 당시의 한국군에 의해 빚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 예컨대 당시의 한국 군인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한국인에 의해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증거도 있다.¹²⁾ 반면에 한국 군인의 책임을 더 세차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인이 어떻게 동반 귀국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군인이 어떻게 전장상황에서”라는 재반박을 방어해야 할 과제가 또 남아 있다.

더욱이 이 라이파이한 문제는 1965년 이전의 한국인들, 베트남전쟁 기간 중 군인 이외의 많은 한국인들, 소위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국과 베트남의 국가간 부의 균형으로 인해 빚어진 ‘신 라이파이한’ 문제 등과 함께 심층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난 뒤, 전쟁 중에 한국 군인이 ‘라이파이한’의 탄생을 위한 원인제공을 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전쟁수행상의 정당성 중에서 비례성의 원칙, 분별성의 원칙을 동시에 파기하고 있다. 이는 군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인 피해 문제이다. 웨스트모어랜드(W. Westmoreland) 장군은 베트남전쟁 중 민간인 피해에 대해, “지난 3년간 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는 베트남전쟁만큼 민간인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던 전쟁은 유사 이래의 전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

12) 김기태, 『전환기의 베트남』, 조명문화사, 2002, pp. 201-206.

다”고 했다.¹³⁾ 그만큼 베트남전쟁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야전군인으로서 전쟁수칙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전쟁 중 베트남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전쟁수행상의 분별성의 원칙에 엄격히 반하는 행동이다. 또한 전장상황의 혼란스러움과 자연환경 등을 충분히 알면서도, 북부 호찌민이 민간인을 전투원으로 활용했던 점 및 남베트남에서의 공산주의 운동 지원, 그리고 국경을 넘는 호찌민 루트의 건설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게 되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여 연합군 측의 ‘전략촌 계획’ 추진은 그 계획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와는 별개로 전쟁수행상의 비례성의 원칙과 분별성의 원칙, 이중효과의 원칙, 그리고 금지된 수단 사용금지의 원칙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다만 그 시행상의 강압성, 신속성 등은 단점으로 평가되며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점도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민간인의 피해는 전장환경과 당시의 전쟁당사자들의 군사전략적인 특징 등을 통해 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은 민간인의 사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한편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단체는 “양민학살은 있을 수 없으며, 베트남전쟁의 특성상 상당수의 ‘민간인 피해’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베트남전쟁 기간 중 발생한 민간인 피해는 이 전쟁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망, 실종 사건은 해당지역 내 작전에 참여했던 군대의 소행으로 간주될 개연성까지도 안고 있다. 더욱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게 하는 일은 이 문제가 베트남에서 보다는 한국 내, 그것도 한국의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념적 성향을 가진 학자, 단체, 그리고 언론매체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13) M. Maclear, 유경찬 역, 『베트남 10,000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2002, p. 286.

(3)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평가

전쟁에 대한 이론은 크게 세 가지인데 평화주의와 현실주의,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두된 정의전쟁론이 있다.¹⁴⁾ 평화주의가 전쟁을 부도덕하다고 보는 한 극단이라면, 현실주의는 전쟁을 도덕과 무관하다고 보는 한 극단이다. 이를 수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정의전쟁론에서는 일부의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만, 일부의 전쟁은 부도덕하다고 말한다. 정의전쟁론이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점은 양측의 장점을 수용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양측의 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의전쟁론의 전통은 아주 오래 전까지 소급된다. 서구에 있어서 가장 친숙한 전통은 기독교인들과 특히 4~5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e)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화된 로마 제국을 유지해야 된다는 현실에 직면하여 전쟁과 타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 그는 초기의 힘없는 기독교인들이 취했던 것처럼 전쟁에 대한 평화주의적인 입장을 쉽게 채택할 수 없었다. 당시 로마제국이 각종 이교도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전쟁론의 원칙 중 일부를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당한 명분의 원칙(principle of just cause), 적절한 권한의 원칙(principle of proper authorization)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이후 13세기에는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가 정의전쟁론을 더욱 발전시켰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이 전통을 더욱 세속적으로 구체화시켰다.

14) 여기에 관해서는 필자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정의전쟁론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N. Fotion과 A. Valls의 견해를 토대로 언급하고자 한다. 박균열, 『국가윤리교육론』, 철학과현실사, 2005, pp. 418-426.

정의전쟁론의 전통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전통인 기독교 전쟁론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암브로스(St. Ambrose)는 이 주제에 대한 글을 남기고 있고, 그 이전에는 로마인들과 심지어 그리스인들에게까지 정의전쟁론의 전통은 소급된다. 로마인들 중에는 키케로(Cicero)가 있으며, 그리스인들 중에는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등이 있는데 이들은 국가지도자와 군인들이 전쟁에 임할 때 당면하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정의전쟁주의자는 국가가 전쟁을 개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언제 정당화되는지’를 ‘전쟁의 정의’ 문제로 보고, 그러한 전쟁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싸워져야 하는지’를 ‘전쟁수행상의 정의’ 문제로 주장하고 있다(〈표 4〉참조).

한국내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전쟁의 정의’를 확보하지 못한 전쟁에 참전했다는 시각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의 행위 또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군인의 행위 근거가 거대담론으로서의 국가 또는 최상위 정책결정권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직속)상관의 명령’에서부터 찾아지는 것이므로 이 양자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정의전쟁론이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행위에 대한 평가에 적실성이 있어 보인다.

전쟁 자체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유형Ⅰ이 될 것이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유형Ⅳ가 될 것이다. 한편 형식논리적으로는 유형Ⅱ와 유형Ⅲ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 자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군인이 포함되지 않을 유형Ⅱ는 유형Ⅲ보다 훨씬 정당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표 5〉참조).

<표 4> 전쟁에 대한 평가 척도

범 주	원 칙	주요 내용
전쟁 자체의 정당성	①정당한 명분 (just cause)	· 공정한 명분, 정당화, 충분한 이유 · 특정국가의 자기 방어적 권리를 전제
	②좋은 의도 (good intentions)	· 좋은 의도로 전쟁 개시 · 전쟁이 일단히 진행된 후 당사국의 의도에 대한 평가 가능
	③비례성 (proportionality)	· 전쟁수행 비용이 예상되는 이득과 조화되어야 함 · 전쟁해석의 주관적 한계점
	④성공가능성 (likelihood of success)	· 제반요건이 갖추어진 전쟁일지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때 개시해야 함
	⑤최후의 수단 (last resort)	· 합리적인 제반 수단을 동원한 후에도 문제해결 안될 시 전쟁개시
	⑥적법한 권위 (legitimate authority)	·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제반기구(국가 등)에 의해 전쟁개시 · 국가 내부적으로는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전쟁개시
	⑦일관성 (coherence)	· 장기전일 경우, 제반 요건을 갖춘 최초 전쟁의 의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함
전쟁 수행상의 정당성	①비례성 (porportionality)	· 전쟁수행의 군사적 수단이 전쟁목적과 비례해야 함
	②분별성 (discrimination)	· 승전의 필요성에 무관한 군사적 수단의 사용제한(예 : 비전투원과 비군사적 목표 구분)
	③이중효과 (double effect)	· 비례성의 원칙과 분별성의 원칙 동시 고려
	④금지된 수단 (prohibited means) 사용금지	· 금지된 제반 수단을 활용한 군사작전 제한

<표 5> 전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기준

		전쟁 자체의 정당성	
		○	×
전쟁수행상의 정당성	○	유형 I	유형 II
	×	유형 III	유형 IV

4.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현황 및 보훈실태

(1)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현황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중 전사망자가 5,099명, 부상자가 11,232명에 이른다(〈표 6〉 참조). 2004년 기준 베트남전 참전용사 등록 현황은 18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표 7〉 참조).

참전용사들의 학력은 전체 전·공상군경 기준(83,170명)으로 볼 때, 대졸 14.9%(12,378명), 고졸 24.7%(20,572명), 중졸 16.9%(14,020명)이며, 초·등졸 이하가 43.5%(36,200명)로 가장 많았다.¹⁵⁾ 참전용사들의 거주지역은 역시 전·공상군경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대도시 44.4%(36,943명), 중소도시 38.5%(31,997명)이며, 농어촌이 17.1%(14,230명)이다.¹⁶⁾ 참전용사들의

<표 6> 한국군 베트남전 참전병력 및 피해 현황(기간 : 1965-1973년)

(단위 : 명)

	참전 연병력	전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계	전사	순직	사망	계	전투	비전투	
계	325,517	5,099	4,601	272	226	11,232	8,380	2,852	4
육군	288,656	3,850	3,476	243	140	8,211	5,567	2,644	4
해군	36,246	1,240	1,125	29	86	3,021	2,813	208	
공군	615								

출처 : 최용호, 앞의 책, p. 429.

15) 국가보훈처, 『보호년감』, p. 114.

16) 위의 책, p. 116.

<표 7> 참전유공자 등록현황

(단위 : 명)

	합 계	6·25전쟁	베트남전쟁
합 계	480,647	300,262	180,385
1996년	57,671	40,430	17,241
1997년	54,400	30,851	23,549
1998년	32,326	18,018	14,308
1999년	53,310	25,408	27,902
2000년	62,223	41,563	20,660
2001년	34,210	21,016	13,194
2002년	130,966	102,727	28,239
2003년	32,209	17,739	14,470
2004년	23,332	2,510	20,822

주 : 6·25전쟁 및 월남전 동시 참전자(1,729명)는 6·25전쟁에 포함.

출처 :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p. 204.

직업은 전·공상군경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봉급생활자 15.1%(12,576명), 농수산 12.2%(10,134명), 상업 7.5%(6,262명), 자유노동 8.2%(6,792명), 무직 57.0%(47,406명)로 나타났다.¹⁷⁾

전체적으로 볼 때, 참전용사들의 학력은 60.4%가 중졸이하이며, 거주지역은 중소도시이상이 82.9%이며, 무직이 57.0%이다. 이러한 제반 통계적 수치는 참전용사들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2)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보훈실태

현재 한국 내에서 베트남전쟁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쟁으로 평가되는

17) 위의 책, p. 117.

경향이 있다. 하지만 베트남전쟁에 대해 추념해서는 안된다는 법률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참전유공자들과 전사적 맥락에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측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 스스로 자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법률적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대책은 부실한 실태이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몇 가지의 예들이다. 첫째, 국가주도의 베트남전 참전 기념 의례행사이다.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베트남전 참전 국군 파병의 날 제정’을 주장한 적이 있다.¹⁸⁾ 6·25전쟁의 경우,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기념물들은 출신별, 병과별, 지역별 등으로 다양하게 추모되고 있다.¹⁹⁾ 하지만 베트남전 참전자를 위한 별도의 국가주도의 기념물이나 의례의 날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강원도 화천군 오음리에 건설 중인 ‘파월용사 만남의 장’에 세워지고 있는 월남전 참전기념물에 국가보훈처에서 5억원을 지원했는데,²⁰⁾ 이것도 지원사업이지 주관사업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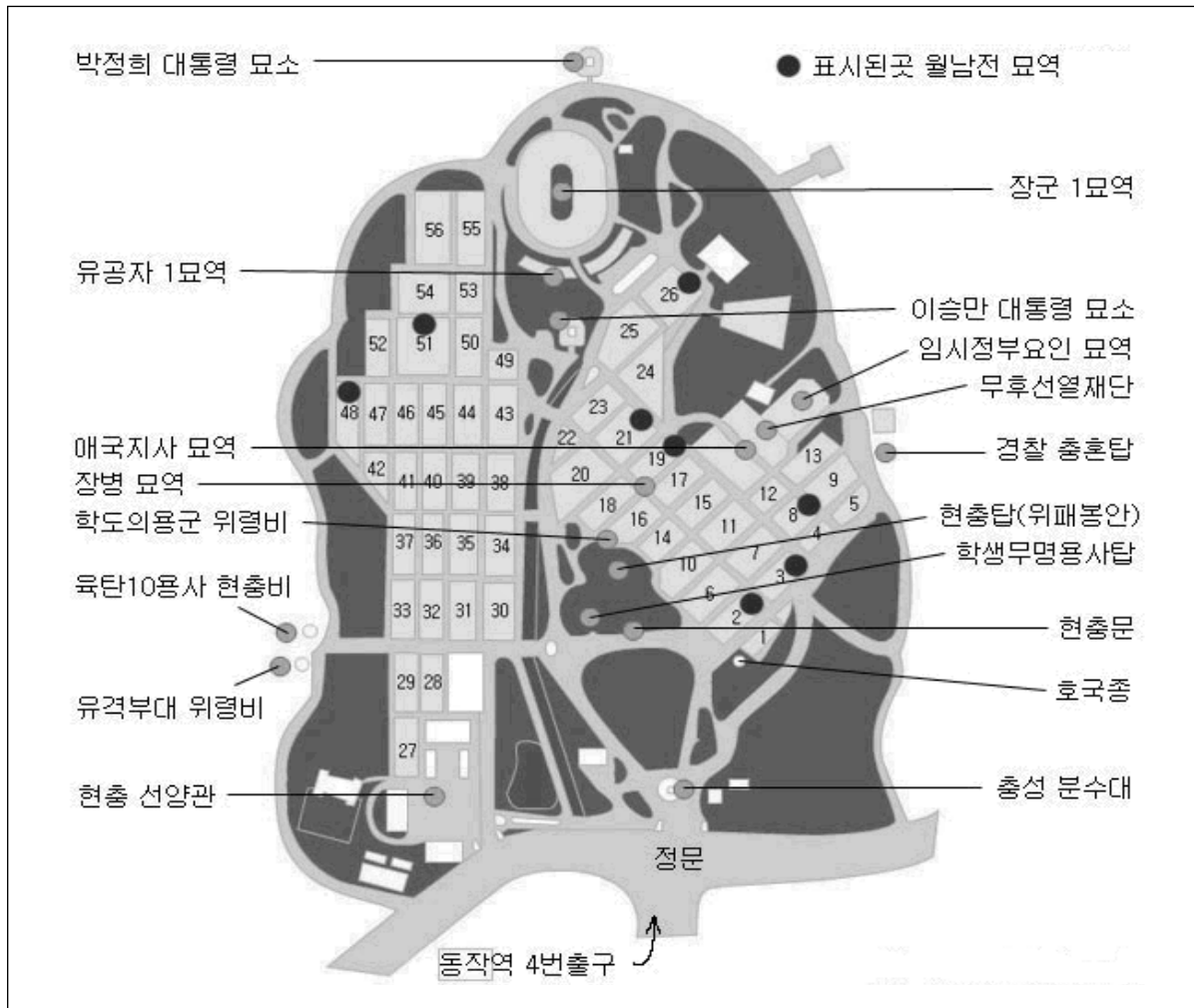
둘째, 국립묘지 안장실태이다.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경우, 베트남전 참전이 지속되면서 전사자가 늘어나자 1971년부터 1973년까지 묘역 증설을 하게 되는데,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묘역과 관리체계는 그나마 전사자들을 사건사적으로 한데 모일 수 있게 하기보다는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그림 1) 참조).

18) 2002년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1개월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국민참여 코너)에 베트남참전전우회의 회원이 전국의 네티즌에게 호소하는 글이 실렸다.

19) 국립현충원(서울)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시설물(참배/추모시설)을 살펴보면, ①충열대, ②경찰충훈탑, ③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④재일학도의용군 전몰용사 위령비, ⑤육탄 10용사 현충비, ⑥유격부대 전적 위령비, ⑦50년 현지임관 전사자 추념비, ⑧육사7기 특별동기생 추모탑, ⑨포병장교 충훈비, ⑩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http://www.nmb.mil.kr>, 2005. 11. 11 검색).

20) 심주형,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기억의 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75.

[그림 1] 국립현충원(서울)내 월남전 참전용사 묘역



주 : 초기 파월자는 26번 묘역에 많이 안장되었고, 1970년 이후는 2번, 3번 묘역에 많이 묻혀있음. 파월 전사자는 총 4,646위로 주로 제 2, 3, 8, 19, 21, 26, 48, 51묘역에 안장되어 있으며, 묘역별로는 사병이 총 4,341기로, 2번 묘역 971기(7104-7303), 3번 묘역 565기(7103-7301), 8번 묘역 67기(6903-7005), 19번 묘역 284기(6904-6910), 21번 묘역 407기(6803-6903), 26번 묘역 1,482기(6611-6804), 48번 묘역 231기(6604-6611), 51번 묘역 334기(6511-6605) 등이며, 장교는 총 305기로, 장교 3 묘역 57기, 장교 51 묘역 248기로서, 전체 파월장병 안장은 총 4,646기임.

셋째, 국립묘지내 각종 추모시설이다. 서울 국립현충원의 경우 현충시설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독립운동시설’과 ‘국가수호시설’이 있다. 여기서 베트남전과 관련된 국가수호시설은 총 852개소로, 지역별로는 강원 125, 경기

118, 경남 93, 경북 86, 광주 6, 대구 12, 대전 6, 부산 18, 서울 26, 울산 6, 인천 16, 전남 79, 전북 84, 제주 63, 충남 48, 충북 66로 편제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상당히 편차가 심한데, 특히 강원도에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수호시설물이 건립되어 있다.²¹⁾ 이 중에서 베트남전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탑재하여 공식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된 것은 5개소에 지나지 않다.²²⁾

베트남전쟁 자체가 아닌 참전자들에 대한 기념사업은 객관적인 선상에서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참전자들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숭고한 군인정신에 근거한 것이지, 그들이 참전하게 된 전쟁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설령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에 근거한 명령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추모되어야 한다.

5. 향후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정책 개선방향

(1) 개선방향의 원칙

향후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정책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성의 원칙이다. 국가보훈의 기준은 국가이다. 민족이나 특정의 이념은 단수로 기준이 될 수 없지만, 국가는 가능하다. 심지어 민족의 개념도 국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21) 국가보훈처(민족정기선양센터) 홈페이지(<http://narasarang.mpva.go.kr>, 2005. 2. 14 검색).

22) 국가보훈처(민족정기선양센터) 홈페이지(<http://www.narasarang.mpva.go.kr>, 2005. 2. 14 검색).

둘째, 공공성의 원칙이다. 국가 구성원 중 특정의 세력이나 지역을 위한 보훈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공의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셋째, 절박성의 원칙이다. 한국의 국가보훈은 기본적으로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을 기본 대상으로 삼는다. 그것은 전쟁에서의 군인들의 여건 자체가 매우 급박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예측가능성의 원칙이다. 참전용사의 공훈은 이후의 참전군인들이 나도 저러한 행동을 하면 후세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다섯째, 형평성의 원칙이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국가유공자 집단내의 다른 비참전유공자와의 예우상의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둘째, 다른 전쟁참전자와의 예우상의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통합성의 원칙이다. 사회통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민원해소를 위한 단기적인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통합을 말한다. 따라서 단기적인 국면에서 국가보훈의 원칙상 부합되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설득시켜야 한다.

일곱째, 수월성의 원칙이다. 참전용사는 다른 어떤 국가유공자보다 우대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쟁이 군인에게 가장 초월적 의무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평화성의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전쟁은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모든 전쟁을 그 자체가 갖는 살인, 파괴 등의 부정적 이미지와 연결하여 부정한다거나, 평화보다는 전쟁 자체에 천착하려는 경향 또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지속성의 원칙이다. 한번 결정된 보훈의 원칙, 대상 등은 획기적인 정책상의 변혁이 없는 한 큰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2) 분야별 개선방향

1) 국가 제도상의 개선

전쟁에 대한 국가의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 전쟁에 대한 기억과 그에 대한 추념사업 등에 있어서도 권위를 가진 국가의 권력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대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보훈전략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을 위한 국가 제도상의 개선점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보훈관계 법령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2005년 5월 31일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률은 기존의 개별법령이 갖는 시혜자의 사실상의 시효의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총괄적 성격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색을 맞추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이 법률의 조문에서도 ‘희생·공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마치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5·18민주유공자’들(이후 유사한 사례도 포함될 것으로 추정)의 ‘희생’(국가대상 자발적 의지라기보다는 ‘되다’형 동사로서 국가의 피해자라는 의미가 강함)을 지나치게 강조하여,²³⁾ 국가보훈이 기본적으로 지향하고자

23) ‘5·18민주유공자’의 용어 사용은 중층적인 잘못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로 인해 명예회복이 되고 보상을 받게 되는 대상은 모두 피해자들이다. 이 피해자들이 ‘유공자’가 된 것이다. 이 법률안이 개정된 시점과 동시에 전상을 입지 않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군인들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기존명칭: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참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유공자’가 된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임무 수행과정에서 특별한 공헌을 하여 공을 인정받은 전통적인 ‘유공자’와 구분이 되지 않으며, 더욱이 6·25전쟁 및 월남전이 아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상자에서 누락된 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더욱이 국가공무원은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오류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의 해외파병 및 유엔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s) 등의 경우와도 대비된다.

하는 국가대상 자발적 기여자를 지칭하는 ‘공헌’이 배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5·18’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유공자로 지정함은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사한 사례, 즉 거창사건,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삼청교육대 등의 경우와 대비된다.²⁴⁾ 최근 당정협약안에 의하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국가의 시효이익 포기’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²⁵⁾ ‘5·18’의 경우 여기에 포함하여 피해·보상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그 희생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현행대로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용어의 측면에서 보면 ‘희생’ 대신에 자발성이 강조된 ‘헌신’이라는 용어를 권고하며,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희생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모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 명시된 혜택을 받고자 하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의 당연한 의무조항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상기 제반 내용은 이후 관련법령개정 및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보훈대상자 추모를 위한 정부 부처간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군인 및 군대문화와 관련된 보훈대상자 및 그 시설은 ‘전쟁기념사업회법’ 및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방부의 관할하에 운영·유지된다. 한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그리고 전통적인 국방부 사안인 월남전고엽제피해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

24) 국가보훈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5·18’관련 법안 제정시에 ‘4·19혁명’의 경우가 참고되었다고 하는데(김중성, 앞의 책, p. 164), 이는 잘못된 비교라고 본다. ‘4·19혁명’은 한국 정치발전사에서 볼 때 국가 권력의 공백기에 당시의 대학생들이 권력을 획득하여 이후의 정권에 이관하였으므로 정통성 있는 ‘혁명’으로 간주하는 것이 학계의 공인된 의견이므로, 이 와중에서 기여한 유공자 및 피해자의 경우 ‘5·18’과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25)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자 명예회복 추진,” <http://www.yonhapnews.co.kr>(2005. 11. 13 검색).

처가 관할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가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국가보훈처는 ‘민족주의 및 인권·평화·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 전체적인 이념적인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목숨을 바쳐 국가에 공헌하겠다고 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사무는 마땅히 한 곳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그 주관은 국가보훈처가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방부는 현재와 미래의 실제적인 방위태세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정부부처간의 역할 재조정 문제는 명예현창 사업에서도 발견된다. 우선 국가보훈처의 경우 ‘참전유공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나 베트남 참전용사 ‘지덕칠’을 조회한 결과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⁶⁾ 이러한 결과는 다른 월남전 참전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²⁷⁾ 한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경우 ‘호국전몰용사DB’를 운영하고 있으나 ‘창군기’와 ‘한국전쟁’(현재 ‘ㄱ’까지 완전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까지 18권 16,325명에 대한 공훈기록이 완료된 상태이다. 그런데 DB 방식이 매우 조악하게 되어 있다. 현재는 ‘성명, 군별, 계급, 군번, 생년월일, 출생지, 소속부대, 전몰일자’ 등의 요소별로 작성되어 있는 실정이다.²⁸⁾

이들 요소들은 차후 역사적인 연구를 위한 중요한 변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훈 및 피해대상자 관련 법령의 명칭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훈대상자군(群)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참전용사의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 군인(경찰관 등 국가공무원 중 위험직군 포함)의 경우, 임무에 따라 전시, PKO, 평시 등으로 구분하여 이것을 변수의 한 축으로 놓고, 또 다른 변수의 한 축에 사망, 질병, 기타 등의 경우를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26) <http://narasarang.mpva.go.kr/person-search/entry-search-1.asp>(2005. 11. 13 검색).

27) 이 사안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필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관련자료가 국방부로부터 이첩되어야 하며 해당자의 등록신청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답했다(2005. 11. 3).

28) <http://www.imhc.mil.kr/> (2005. 11. 13 검색).

는 변수간의 상관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하여 과감하게 외부용역연구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훈정책 수립 및 집행시 보훈대상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장소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한 분들을 위해 국가는 마땅히 추념해야 한다. 그런데 ‘호국’이라는 말은 적어도 6·25 전쟁 이후에 발생한 베트남전쟁이나 걸프전쟁과 같은 해외에서 발생한 전쟁까지는 관련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영토를 지킨다’는 의미로 장소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국’이라는 말 대신에 ‘위국’(爲國) 또는 ‘애국’(愛國)이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호국·보훈의 달 또는 보훈의 달’(국가보훈기본법 제25조②)은 ‘국가보훈의 달’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대간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2005년 새롭게 제정된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기존의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이외에, 경북 영천, 전북 임실, 경남 산청, 경기 이천 등에 국립호국원(현재는 호국용사묘지로 명명)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전국토가 국립묘지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으로는 개인묘지조차도 이러한 국토의 협소함을 감안하여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꾸고자 하는 여론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는데, 국립묘지는 다양한 장소를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 구성을 재래식 장묘형태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전쟁단위의 종합 상징물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종합적인 명부가 다양한 형태로 강구되어 비치될 필요가 있으며, 개별 묘소건립은 지양하고 나머지 공간을 국립공원형식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하다.

넷째, 포로 송환 및 유해 발굴 작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죽은 군인에 대한 예우는 산 자의 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외국의 사례 등을 잘 참조하여

기구를 상설화해서 지속적인 유해 발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한국군 유해 발굴 작업은 2003년에 처음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지속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베트남전쟁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6·25전쟁까지도 소급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의료지원체계를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군인 등 현재의 국가보훈 예비대상자들의 직업적 특징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료지원체계는 보다 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정보는 현재에서부터 미래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현재 군의 의료체계는 16개 군 병원과 국방부직할의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크게 17개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보훈병원은 5개소가 있으며 위탁의료병원은 전국적으로 170개가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양자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거의 없어 보인다. 실제 야전부대에서 의무작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투시 기동을 하게 되는 사단단위 이하의 1차진료기관은 군 편제 속에 그대로 두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군 및 군단, 지역단위의 군 병원과 보훈병원은 ‘국가공훈병원’(가칭)으로 통·폐합하여 적어도 ‘국립의료원’ 정도의 인적·물적 여건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될 때 군인 → 제대군인 → 보훈대상자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수혜자 중심의 국가보훈의료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더불어 군의 의료진(군의원 및 간호장교)의 경우 의무복무 및 직업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이 병원에 파견하여 선진 의료진과 협력체제 하에서 수행하게 하면 될 것으로 본다.

여섯째, 국가보훈 상징인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독립기념관 및 광복회와 협의하여 ‘이달의 독립인물’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고, 전쟁기념관은 ‘이달의 호국인물’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국가보훈처에서 총괄하여 ‘이달의 국가보훈인물’로 통폐합하고, 구분이 필요할 경우는 국가보훈의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인물을 선정·선양해야 할 것이다.

2) 사회 인식상의 개선

향후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을 위한 사회 인식상의 개선점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전쟁’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야 한다. 전쟁으로 인해 약탈·파괴·폭력·살인이 자행되고 이로 인해 관련 공동체는 전반적인 퇴보를 겪게 된다. 인류의 모든 전쟁이 가시적으로 보면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은 본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전쟁 자체의 목적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적 행위이지, 그 자체가 목적적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쟁의 역사는 ‘전사들의 호전적 의지의 연장’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의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도 전쟁을 위한 호전적 의지를 추앙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라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의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의 명칭도 ‘평화박물관’(가칭)으로 개칭하는 것도 생각해볼직하다.

둘째, 전쟁자체에 대한 평가 척도와 전투행위에 대한 평가 척도를 달리 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전쟁은 거의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 그 전쟁 자체가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당한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한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설령 그 전쟁 자체가 부당한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적법한 군법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전투행위까지도 폄하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이유로 비록 전쟁 자체가 부당한 전쟁이었다고 하더라도, 전투행위에 참여한 군인들의 기억의 공동체를 구비하기 위해 전쟁자체의 이름은 지속되어야 한다.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부당한 전쟁 자체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국회와 정부를 포함한 최고결정권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학술적 개선

향후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을 위한 학술적 개선점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보훈관련 학술단체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보

훈관계 학술단체로는 한국보훈학회, 한국국민윤리학회, 군진학회, 보훈의료학회 등의 학회가 있으며, 군사편찬연구소와 안보문제연구소 등의 관변연구소들이 있다. 이들간의 학술적 연대에 의해 국가보훈사업에 대한 학문적 성과가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초·중등 교과서 개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초·중등 교과서 개발시 그 기본적인 지침격에 해당되는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에 ‘국가보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6. 맺 음 말

본 연구는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의 보훈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필자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주요한 기억들, 즉 고엽제 피해 문제, 라이파이한 문제, 민간인 피해 문제 등이 아직도 진화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 전쟁자체에 대한 명확한 국가보훈의 토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베트남전쟁 자체가 정당한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중요한 이유로 판단되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정부 부처의 업무현황 등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이에 필자는 우리 한국사회가 베트남전쟁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극복하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바람직한 보훈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보훈 개선방향의 원칙으로, 국가성, 공공성, 절박성, 예측가능성, 형평성, 통합성, 수월성, 평화성, 지속성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 제도상의 개선, 사회 인식상의 개선, 학술적 개선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하였다.

개선방향에 대해 부연하여 요약하자면, 첫째, 국가제도상의 개선점으로, ①보훈관계 법령체계의 재정비, ②국가보훈대상자 추모를 위한 정부 부처간의 역할 재조정, ③보훈정책 수립 및 집행시 보훈대상의 형평성 확보, ④포로 송환 및 유해 발굴 작업에 대한 관심 제고, ⑤의료지원체계 재구축, ⑥국가보훈 상징인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안하였다.

둘째, 사회인식상의 개선점으로 ①‘전쟁’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기, ②전쟁자체에 대한 평가 척도와 전투행위에 대한 평가 척도의 구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술적인 개선점으로, ①보훈관련 학술단체간의 협력체제 강화, ②보훈관련 초·중등 교과서 개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제안하였다.

이상으로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의 보훈대책에 대한 진단과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가는 스스로가 행한 업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전쟁 또한 국가의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므로, 국가는 그 행위에 참여한 공적인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해 명예를 고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추도의식은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향후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된 애국자들에게 상징적인 약속과도 같은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6. 2. 3, 심사완료일 : 2006. 3. 9)

주제어 : 국가보훈, 베트남전쟁, 보훈대상자, 정의전쟁론, 참전용사

<ABSTRACT>

A Study on Reforming the Policy Making and Administration for Vietnam War Veterans

Park, Kyun-yeol

This study is aimed to preparing for policies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or soldiers who have participated in a Vietnam War. Since some memories concerning the Vietnam War, that is to say, an Agent Orange (defoliant)-based injuries, a half-blood of Korean-Vietnamese (Lai Daihan) to a Vietnamese mother and Korean father issue, a civilian injury issue and so on, have not been solved perfectly yet, so the author tried to show the solving way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uring the war.

And the author wants to re-orient false recognitions about the Vietnam War and show the desirable compensation programs for patriots and veterans. To do this, the author suggests some principles as follows: nationality, publicity, imminence, predictability, equity, integration, competitiveness, harmony, and durability. On the basis of these, the author sets up quite concrete alternatives which is composed of state-systematic reforms, social conscious reforms, and academic reforms respectively.

To sum up, at first, the socia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s follows:
① reforming of laws and ordinances connected with patriots and veterans,
② readjusting of inter-agency role in commemoration of patriots and veterans,
③ securing equity for veterans in process of the policy making and executing, ④ highly concerning about repatriating of prisoners of war and excavating the dead remains, ⑤ reconstructing of medical assistance system,

⑥ the planned & systematic management of symbolic veteran characters have been suggested.

Secondly, the social cognition needs to be changed to as follows: ① recognizing 'war' righteously, ② concerning between valuation criterion of war in itself and valuation criterion of military action have been presented.

Finally the academic atmosphere needs to be improved as follows: ① reinforcing of collaboration system among academic societies concerning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② developing of a elementary & secondary textbook related to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s yet, several diagnoses and alternatives on compensational measures of Vietnam veterans have been addressed. The authorities should have taken a responsibility for war-relating activities which were p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As the war is also one of national main policies, the government ought to be responsible for enhancing the honor and authority of veterans. Such a memorial ceremony seems to be a symbolic promise to the potential ardent patriots who will be devoted to their life in case that a nation comes to a crisis at present and from now on.

Key Words: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Vietnam War, Persons of National Merit, Just War Theory, Veterans
